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864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소병훈·허영·박지원  
장종태·조계원·박정  
박용갑·윤준병·강준현  
서영석·안태준·안호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과후 과정 수강료는 대체로 학원보다 저렴하나 비싼 경우도 있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23조의3 신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방과후 과정 이용권)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방과후 과정 이용권(이하 “방과후 과정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방과후 과정 이용권의 지원 단가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분기별 수강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 이용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과후 과정 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br>교육과정을 <u>운영하여야 한다.</u> |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br>----- <u>운영하여야 하며, 교</u><br><u>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u><br><u>정(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u><br><u>그 밖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u><br><u>하 같다)을 운영할 수 있다.</u>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⑤ <u>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u><br><u>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u><br><u>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u><br><u>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u><br><u>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적합</u><br><u>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u><br><u>다.</u>                                                                |
| <u>&lt;신 설&gt;</u>                           | 제23조의3(방과후 과정 이용권)<br>① <u>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u><br><u>생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u><br><u>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u><br><u>(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u><br><u>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방과</u><br><u>후 과정 이용권(이하 “방과후</u><br><u>과정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u><br><u>급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u> |

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  
다.

② 방과후 과정 이용권의 지원  
단가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의 분기별 수강료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분기  
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방  
과후 과정 이용권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과후 과정 이용  
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